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안덕근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제도, 동 행정조사 자료의 열람·복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(2024.2.20., 법률 제20321호)이 '24.8.21일 시행될 예정인바,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절차, 방법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 마련(안 제1조의6 등 신설)

행정조사 자료의 열람·복사 요구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열람·복사 절차 및 열람·복사 신청서식 마련

나.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·방법 등 마련(안 제2조 등 개정)

시정명령의 방법,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, 시정명령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. 00. ~ 0. 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6 및 제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6(자료 열람·복사 요구권자의 범위) 법 제7조의2에서 “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조사대상자(참고인은 제외한다)
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정대리인
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호사
4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한 사람

제1조의7(자료 열람·복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제1조의6에 규정된 자가 법 제7조의2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·복사 신청서를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

출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열람·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시정권고의 방법 등)”을 “(시정권고 등의 방법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”을 “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시정권고”를 각각 “시정권고나 시정명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특허청장, 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, “제1항”을 “법 제8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, 그 밖에 법 제8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특허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시정권고”를 “시정권고나 시정명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특허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서”를 “제1항에서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시정권고 및”을 각각 “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및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2호에 위반행위란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나. 법 제8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	300	600	1,200

별지 제7호서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6(자료 열람·복사 요구권자의 범위) 법 제7조의2에서 “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/u> <u>1. 조사대상자(참고인은 제외한다)</u> <u>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정대리인</u> <u>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호사</u> <u>4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한 사람</u>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7(자료 열람·복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제1조의6에 규정된 자가 법 제7조의2에 따라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·복사 신청서를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</u>

제2조(시정권고의 방법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.

1. 시정권고의 이유

2. 시정권고의 내용

3. (생략)

<신설>

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열람·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조(시정권고 등의 방법 등)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은 -----
-----.

1. 시정권고나 시정명령-----

2. 시정권고나 시정명령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조의2(공표의 방법 및 절차)

①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
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
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
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

법 제8조

제4항

④ 제2항 또는 제3항-----

-----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, 그 밖에 법 제8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조의2(공표의 방법 및 절차)

① 특허청장-----

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시정권고의 이유 및 내용

②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.

<신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3조(의견청취의 절차) ① 특허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및 공표의 상대방, 이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시정권고나 시정명령--

② 특허청장-----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-----

제3조(의견청취의 절차) ① ----

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및 --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 및 공표의 상대방, 이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공표의 상대방, 이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.

④ (생략)

② -----
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및 --

-----.

③ ----- 시정권고 또는
시정명령 및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

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1호			
1)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		500	1,000	2,000
2)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하거나 숨기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		200	400	800
3)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		100	200	400
4)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확인이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 기피행위를 한 경우	법	50	100	200
나. 법 제8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 제1의2호	300	600	1,200
다. 법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2호	300	600	1,200

부정경쟁행위사건 자료 열람·등사 신청서

신청인	상호(또는 명칭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	법인번호	(법인사업자만 기재)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	
	전화번호			
	이메일			
신청사유	사건과의 관계			
	신청이유			
	부수(등본) 및 구분			
신청대상 기록 및 범위	사건번호			
	기록종별			
	법률조항	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		
	확정(처분) 일자			
	신청범위			

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자료의 열람·복사를 요구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

대 리 인 : (서명 또는 인)

특허청장·지방자치단체장 귀하

첨부 : 위임장 1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8181